

단체회원사 현황

특급 회원사(22개사)



1급 회원사(17개사)



2급 회원사(6개사)



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

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대담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사무소)

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또는 대전광역시에 둔다.

제3조(목적)

본회는 대담과 그 관련시설의 조사·설계·건설·관리·운영 및 저수의 이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1. 4. 15)

제4조(사업)

본회는 제3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 (개정 2011. 4. 15)

- ① 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성과의 보급
- ② 댐에 관한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
- ③ 댐에 관한 기술교류 및 지도
- ④ 댐 및 수자원에 관한 수탁연구, 자문 및 평가
- ⑤ 국제대담회의에 참가 및 회원국 간의 협조
- ⑥ 그 밖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회계년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6조(시행세칙)

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 (개정 2011. 4. 15)

제2장 회원

제7조(회원 및 자격)

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, 단체회원사 및 단체회원사 소속회원으로 한다. (개정 2011. 4. 15)

① 개인회원은 대담 및 관련시설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본회와 관련된 기관 및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1. 4. 15)

- 1. 종신회원 : 입회원서를 작성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사람 또는 본회 전무이사 이상 역임한 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(개정 2011. 4. 15)
- 2. 원로회원 : 개인회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회원 (개정 2011. 4. 15)
- 3. 학생회원 :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대학원생. 다만, 졸업 또는 재적 등으로 인해 학적을 상실한 경우 학생회원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. (개정 2017. 4. 14)

② 단체회원사는 대담 및 관련시설과 관련된 공공기관 법인 또는 기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1. 4. 15)

- 1. 특급 단체회원사 : 시행세칙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 기관 또는 단체 (개정 2011. 4. 15)
- 2. 1급 단체회원사 : 시행세칙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 기관 또는 단체 (개정 2011. 4. 15)
- 3. 2급 단체회원사 : 시행세칙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 기관 또는 단체 (개정 2017. 4. 14)

③ 단체회원사 소속회원은 제2항의 단체회원사 소속직원 중 시행세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. (개정 2017. 4. 14)

④ 제9조 제1항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비 납부 시까지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한다. (개정 2011. 4. 15)

제8조(제명 및 자격상실)

- ① 회원이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.
-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 (개정 2011. 4. 15)

- 1. 사망
- 2. 본인의 탈퇴 또는 단체회원사의 탈퇴 (개정 2009. 3. 18)
- 3. 이사회 의결
- 4. 단체회원사 소속회원의 경우 본인이 속한 단체회원사의 탈퇴 혹은 본인의 단체 회원사 퇴직 (개정 2011. 4. 15)

제29조(회의록)
이사회 회의록은 회의 후 15일 이내에 회장 및 전무이사 이상 출석 이사 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. (개정 2011. 4. 15)

제7장 자산 및 회계

제7장 자산 및 회계

제30조(자산)
본회의 자산은 회비, 사업수입, 찬조금, 기타 수입으로 한다. (개정 2011. 4. 15)

제31조(경비지출)
본회의 경비는 자산에서 지출한다. (개정 2011. 4. 15)

제32조(수지예산서 등의 제출)
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09. 3. 18)

①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(개정 2011. 4. 15)

②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(개정 2011. 4. 15)

제8장 정관개정 및 해산

제8장 정관개정 및 해산

제33조(정관개정)
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4조(해산)
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잔여재산 은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 (개정 2021. 10. 27)

제9장 위원회 조직 및 운영

제35조(위원회 조직)
①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11. 4. 15)

- 기획위원회 : 본 회의의 주요 사업계획 구상 및 예산 검토·기타 대담회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당 (개정 2011. 4. 15)

- 기술위원회 : 본 회 주관의 국내 심포지엄 개최 및 연구용역 수주활동, 그 밖의 댐 사업 관련 기술 분야의 자문을 담당 (개정 2011. 4. 15)
- 국제협력위원회 : 국제대담회·국제기술교류회의의 주제 선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 (개정 2011. 4. 15)
- JEF 위원회 : 젊은 기술자들의 지식·정보 교류 및 기술포럼 등을 통한 수자원사업 정책 제언 등 담당 (개정 2017. 4. 14)

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상설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 (개정 2011. 4. 15)

제36조(위원회 구성)

① 회장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부회장 중 1인을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하며, JEF 위원장은 JEF 위원 중 2인을 위촉한다. (개정 2017. 4. 14)

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20인(단, JEF 위원회는 50인 이내)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17. 4. 14)

③ 제2항에 따른 부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. (개정 2009. 3. 18)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제반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7. 4. 14)

제37조(위원회별 운영규정)

①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에서 정한다. (개정 2011. 4. 15)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09. 3. 18)

부 칙

1-1. (정관의 효력발생 시기)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1972년 1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1-2. (준용)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2.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81년 2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3.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84년 2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4-1. (정관의 효력발생 시기)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87년 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4-2. (임원의 임기의 적용) 현 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변경된 임기를 적용한다.

5.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2년 3월 3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6.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3년 2월 15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7-1. (정관의 효력발생 시기)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4년 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7-2. (임원의 임기의 적용) 변경된 정관에 의해 추가로 선출된 임원은 보선으로 간주하고, 임기는 기존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8.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5년 2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9.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6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10-1. (정관의 효력발생시기)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7년 11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10-2. (경과조치) 본 정관개정이전에 이미 선임된 당연직부회장, 명예회장 및 고문은 1998년도 정기총회 시까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.

11-1. (정관의 효력발생시기)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09년 3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11-2. (경과조치) 본 정관개정이전에 이미 선임된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까지로 한다.

12.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11년 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13.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17년 4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14.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